

새로운개혁교회 정관

Saeroun Reformed Church Articles of Incorporation

새로운개혁신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교회는 '새로운개혁신교회'라 칭한다. 영어로 SAEROUN REFORMED CHURCH 로 표기한다.(이하 '본교회'라 한다.) 본교회는 2025 년 3 월 30 일 레오니아에 위치한 새로운교회(Saeroun Church)와 가필드에 위치한 뉴저지개혁신장로교회(New Jersey Reformed Presbyterian Church)가 통합하여 창립한 교회이다.

제 2 조 (위치)

본 교회는 미국 뉴저지주 가필드(98 Monroe St, Garfield, NJ 07026)에 위치한다.

제 3 조 (목적)

본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 교회로, 예배, 친교, 교육, 선교, 봉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복음의 진리를 구현하기에 힘쓰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이민교회와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과 한국, 온세계에 하나님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제 2 장 신앙고백

제 4 조 (근거)

본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 5 조 (정신)

본교회는 사도신경, 니케아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신앙의표준으로 삼는다..

제 3 장 교인

제 6 조 (자격)

본교회는 예배와 친교등의 모든 활동에서 모든 이들을 차별없이 환영한다. 교회의 교인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다.

1. 본교회의 교리에 동의하는 자
2. 치리회의 결의에 순복하기로 서약한 자
3.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영적 혜택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자
4. 교인은 참여와 헌신의 정도에 따라 방문자, 예비교인(혹은 원입교인), 헌신교인(혹은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 분류한다.

(1) 방문자 : 교회의 예배와 친교모임에 방문한 자로서 아무런 의무와 권리가 없다.

(2) 예비교인(혹은 원입교인) : '원입교인 등록원서'를 작성한 자로서 즉시 자격을 획득하고 목회자의 지도 하에 예배, 구역모임, 친교, 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

(3) 헌신교인(혹은 세례교인) : '원입교인 등록원서'를 제출 후 1 년이 경과한 후 '교인등록교육'을 이수하고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은 이로써 예배, 봉사, 사역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의무를 지며, 공동의회와 제직회에 참여하고 직분을 받아 교회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얻는다. 또한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15 세 이상)하였거나,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타교회에서 받은 세례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혹은 세례받았음을 당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4)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3 세미만)로, 유아세례를 본교회에서 받은 자이거나 타교회에서 받은 유아세례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이다.

제 7 조 (책임과 의무)

본교회 교인은 신앙의 의무(예배, 헌금, 친교, 봉사, 구제, 교육과 선교)를 성실히 행하여야 하며, 미래를 위한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여 교회의 사역에 적극 협력하고,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치리회의 권위와 결정에 복종해야만 한다.

제 8 조 (권리)

본교회의 세례교인은 성찬예식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지며 교회회무에 참여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 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고 1 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2 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 10 조 (교인의 복권)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온 후 6 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고, 실종된 교인은 교회로 돌아온 후 1 년 경과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제 11 조 (회원권의 검토)

당회는 1 년에 한 번 이상 교인명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양해없이 6 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과 책임을 등한시한 교인을 권면하고, 그 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2 년이 지나면 비교인으로 분류하고 삭제할 수 있다.

제 4 장 직분자

제 12 조(직분자의 구분)

1. 본교회 직분자는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한다.
2.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다.
3. 항존직 중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4. 항존직목사, 임시직전도사는 그 직무특성에 따라 목회자 또는 교역자라 부른다.
5. 본교회의 직분자와 직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당회가 정한 별도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항존직 시무정년)

항존직의 시무정년은 만 70 세가 된 해 연말까지로 한다.(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허락하에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다.)

제 14 조(목사)

1. 담임목사는 하나님나라를 위한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목자로서 행정, 치리, 교육, 심방, 성례식 등의 목회사역을 행한다. 필요에 따라 이 사역을 다른 교역자들에게 위임하여 관리감독한다.

- (1) 청빙 :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 3 분의 2 의 결의와 공동의회 재석회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2) 사임 : 담임목사가 시무사임을 청원하면 당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자의사임을 허락한다.
 - (3) 학습월 : 담임목사는 학습과 성장을 위해 매 3 년에 3 개월씩의 학습월을 가질 수 있다.
2.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하여 부목사를 둘 수 있다.

3. 부목사는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교회에서 2 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부목사를 청빙할 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 재석 과반수로 허락한다. 부목사의 시무는 1 년으로 사역은 연말까지이며 담임목사의 요청, 당회의 결의로 연임한다. 담임목사의 요청 또는 당회의 결의가 어려운 특수상황에서만 자동연임된다.

제 15 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의 자격은 입교인으로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재학생이나 졸업생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당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청빙조건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 16 조(시무장로)

1.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회의 신령상 관계와 교인들을 살피며 당회에 보고한다.

2. 시무장로의 자격은 성도들의 신임을 받는 진실한 세례교인으로 무흠 7 년을 경과하고 30 세 이상된 자이다.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2/3 이상 득표로 피택되며, 당회장으로부터 교육을 4 개월 이수한 후 교회 혹은 교단의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무장로의 시무연한은 3 년으로 하고, 안식년으로 1 년을 휴무 후 피택될 경우 재임할 수 있다. 재임시에는 교육과 장로고시를 받지 않는다. 시무임기는 총 3 회 9 년을 넘길 수 없다.

4. 장로선거의 세부규정은 당회가 정한 별도의 선거규정을 따른다.

제 17 조(안수집사, 권사)

1. 안수집사는 무함세례교인으로 5 년을 경과하고 30 세 이상으로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여 3 개월 이상 당회장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은 후에 임직한다.
2. 안수집사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헌금수납과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권사는 무함 세례교인으로 5 년을 경과하고 30 세 이상으로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여 3 개월 이상 당회장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은 후에 임직한다.
4. 권사는 교역자들을 도와 교우들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서 봉사한다.

제 18 조(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

1.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자의사임을 할 수 있다. 사임서를 제출할 경우 당회가 그 사유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2. 이단 또는 악행,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할 경우 당회가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권고사임시킬 수 있다.

제 19 조(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특별한 사정으로 휴무코자 하면 기한을 정해 당회에 요청하고 당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
2. 자의사임한 직분자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 3 분의 2 이상 동의와 공동의회 과반의 동의로 복직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권고사임된 장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 사임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 3 분의 2 이상, 공동의회 과반의 득표로 가능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 20 조(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는 제직회의 연권회원이 될 수 있다.

제 21 조(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

타교회에서 이명을 한 항존직분자는 2 년 출석 후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후 2 년이 지나면 당회가 협동항존직분자로 임명할 수 있다. 협동항존직분자가 되면 제직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2 조(명예직)

명예직은 다음과 같이 당회의 결의로 세울 수 있다.

1. 명예장로 : 무함세례교인이 정년(70 세)이 지나면, 당회의 결의로 명예장로로 세워 종신토록 헌신하게 할 수 있다.
2. 명예권사 : 여성무함세례교인이 정년(70 세)이 지나면, 당회의 결의로 명예권사로 세워 종신토록 헌신하게 할 수 있다.

제 23 조(서리집사)

1. 서리집사는 25 세 이상된 자로서 무함세례교인(입교인)으로 1 년을 경과하고 본교회 등록 후 1 년이 경과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다.

2. 서리집사의 임기는 매년 1 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이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당회와 운영위원회

제 24 조(조직) 당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교회를 대표하는 당회는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을 교인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으로 담임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며, 당회장이 임명한 서기를 둔다.
2. 당회장 부재시 당회장이 지명한 당회원이 한시적으로 당회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5 조(당회의 직무)

본 교회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성례(세례, 성찬) 관장
2. 예배주관 및 소속기관단체 감독
3. 향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임시직(서리집사, 전도사)과 명예직(명예장로, 명예권사), 협동직(협동목사, 협동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의 후보추천, 선거주관, 임명
4. 현금수집방안협의 및 실시, 예산수립 및 집행, 재정감독
5.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토지, 건물) 관리
6. 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기소와 판결)
7.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증서교부 및 접수
8. 공동의회소집에 관한 일
9. 기타 필요한 사항처리(제직회, 공동의회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 본교회법인의 이사직 역할 감당
11. 향존직 선거를 위한 후보 추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 26 조(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과반이 소집을 요청할 때

제 27 조(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28 조(당회가 비치할 문서)

당회가 비치할 문서는 다음과 같으며, 당회서기가 문서의 기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1. 당회록(정기, 임시)
2.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3. 유아세례교인명부
4. 책벌 및 해벌교인명부

5. 실종교인명부
6. 이명교인명부
7. 혼인(교인)명부
8. 별세(교인)명부
9. 비품대장(강대상, 의자, 서류함 등)
10. 교회의 부동산(토지, 건물)대장

제 29 조(운영위원회)

당회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당회의 직무를 위임하여 교회를 운영한다.

제 30 조(운영위원회의 조직)

1. 당회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인원과 위원은 당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3 년째는 휴무한 후 다시 임명받을 경우 다시 2 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제 6 장 회의 및 소속기관 단체

제 31 조(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회원은 만 18 세 이상 등록된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하며,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1 주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교회에 광고해야 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교회의 일반회계의 예/결산, 특별회계 예/결산 등)
 - (3) 본교회 재적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 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때
4. 공동의회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5.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 (2) 제직회가 청원할 경우 예산 및 결산
 - (3) 직분자 선거(담임목사청빙 및 장로, 집사, 권사 선택)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출석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하고, 인선(항존직청빙 및 선택)에 대한 것은 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2 조(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은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서리집사, 전도사로한다.

2.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제직회의 소집은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와 제직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인 담임목사가 한다
4. 제직회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여 출석수로 개회하고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결의한다.
5. 제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사항
 -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결산사항
 - (3) 구제비 및 특별회계수입/지출사항
 - (4) 당회가 요청한 사항(교역자 청빙 및 특별사업)
 - (5) 기타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6. 분과위원회, 특설위원회 및 각종 제직회의부서와 임무와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제 33 조 회의의 결의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집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7 장 자치단체

제 34 조(자치단체)

자치단체는 당회의 인준을 받아서 운영되며 회칙과 세부규정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교회의 회계 및 재산 운용 관리

제 35 조(회계년도)

매년 1 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원칙)

본교회의 회계와 예산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예산 및 회계, 재정보고서는 현금회계법을 따르며 유동자산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2. 재정보고를 분기별로 당회에 하고, 재정결산은 매년 임명된 감사를 통해 하며, 필요시 당회의 허락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
3. 회계연도예산은 당회의 과반수 이상 결의후 제직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4. 자치기관의 예산은 각 자치기관이 회칙에 따라 집행하되 당회가 허락한 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당회가 지시할 시 내부감사에 응해야 한다.
5. 당회는 예산책정과 심의를 특별위원회나 재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7 조(추가예산 및 항목변경)

1. 교회전체예산에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예산은 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당회 과반수 이상과 제직회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부서별 추가예산은 예산항목변경을 재정부 심의를 거쳐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 과반수 이상 결의 후 집행할 수 있다.

제 38 조(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1. 지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을 사용하기 원하는 부서는 경비발생 전 허락된 예산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2. 재정부는 매회계연도시작에 예산과 관련된 규정을 제직들에게 교육하도록 한다.

제 39 조(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 혹은 당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회에서 결의하고, 제직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제직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 40 조(재정관리)

1. 제직회는 교회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와 편성된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2. 재정의 수/출입은 재정부 담당장로의 책임하에 재정부가 관리한다.
3. 재정관리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재정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41 조(재무상태 보고)

재정부는 매 회계 연도마다 교회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 42 조(재산의 관리)

본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재산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별도로 소유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예산에 허락되지 않은 교회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변경 등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의결의 후 공동의회에서 최종결정한다.
3. 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회법인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개인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제 9 장 감사

제 43 조(재정감사)

매월 수입과 지출을 감사부가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회가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4 조(감사보고)

감사부는 각 제직부서의 재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 10 장 권징

제 45 조(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교회의 질서와 권위 유지하기 위해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고 교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와 징계를 시행한다. 교회 내 신앙과 행위에 대한 판단은 교회법(정관과 헌법)과 질서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 46 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정관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8. 당회의 결의 및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교회내 회무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과 불법복취행위
11. 교회내 중요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외부기관으로 불법유출하거나, 회의록을 불법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획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12. 교회내외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부정과公款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비리행위
13. 거짓으로 교회와 직분자를 고소/고발할 목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거나 가담하는 행위

제 47 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1. 본교회의 책벌은 다음과 같다.

- (1)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 (2) 근신 : 6 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 회 이상 당회에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 (3) 수찬정지 : 1 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 (4) 시무정지 : 1 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권징권)을 정지한다.
- (5) 시무해임 : 1 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 (6) 정직 : 6 개월 이상 2 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 (7) 가중처벌 : 권징의사유(권징 제 45 조)가 5 가지 이상 해당되거나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이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 (8) 면직 : 직분자의 직분을 박탈한다.
- (9) 회원권 박탈: 교인명부에서 제명하며, 성찬식참여권과 공동의회회원권을 상실하고, 교회 회무와 교회 출입을

금지시킨다.

2. 교인에게 부과하는 벌 : (1)견책 (2)근신 (3)수찬정지 (4)회원권 박탈

3. 직분자에게 부과하는 벌 : (1) 견책 (2)근신 (3)수찬정지 (4)시무정지 (5)시무해임 (6)정직 (7)면직 (8)회원권 박탈

제 48 조(권징절차)

교인의 죄과에 대한 권고와 징계에 대하여는 당회의 분과위원회인 기소위원회에서 죄과에 대한 증거 및 자료를 살피고 죄과에 준하는 책벌을 정하여 당회에 상정한다.

제 49 조(의결방법)

1. 당회는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책벌을 심의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당회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책벌을 결의하여 판결한다.

2. 당회는 범죄한 이에게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어 책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50 조(심판사항)

당회는 일반교인 및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범죄사건을 심판한다.

제 51 조 (권징결정의 확정)

권징결정은 당회에서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 52 조(권장결정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권징결정의 선고 또는 고지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결정문에는 이름, 주문, 결정이유를 작성한다.

2. 권징결정의 선고 또는 고지는 당회장이 한다.

제 53 조 (시벌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당회가 시벌한다.

제 54 조(시벌방법 및 가중시벌)

1. 시벌은 당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보에 공시한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자에 대하여는 주보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 시벌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가중하여 시벌할 수있다.

제 55 조(해벌)

1. 시벌 중인 자가 죄과를 인정하고 회개의 경이 뚜렷하면 반성문을 당회에 제출하고 교인 앞에 사과한 후 1 년 후 당회의 3 분의 2 이상 결의로 해벌할 수 있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없이 자동해벌된 것으로 본다.

제 11 장 교단

제 56 조 교단가입과 탈퇴 및 교회간 통합은 당회원 과반으로 결의하여 상정한 안을 공동의회 참석인원의 유효투표수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2 장 부칙

제 57 조(세칙 및 내규)

본 정관에 관한 세칙 및 각 부서의 기관과 단체의 내규는 교회 정관이 규정한 것을 반대하거나 초월할 수 없으며, 당회의 결의 후 시행한다.

제 58 조

본 정관은 공동의회 결의 즉시 시행되며 제정 및 개정은 당회 3분의 2 이상 결의와 공동의회 재석의 과반수 이상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59 조

정관의 해석권한은 당회에 있다.

제 60 조

정관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입한 교단의 헌법, 당회가 정한 내규 등을 따른다. 교단헌법이나 당회내규 등이 정관과 충돌할 때에는 정관을 따른다.